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4월 7일, 박홍배의원 등 20인

나. 회 부 일 자 : 2025년 4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2025.7.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
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 축조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1.)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홍배의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대지급금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범위가 현재 3개월로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체불된 임금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

최근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액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됨.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의 경제적 및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제도는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 노동자들이 퇴직 후에도 체불 임금을 쉽게 회수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특히, 사업주의 도산이나 폐업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체불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 이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는 생산적인 고용 환경을 저해하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에도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대지급금을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현행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퇴직 후에도 대지급금을 보다 원활하게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체불된 임금을 회수할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궁극

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안 제7조제2항제1호).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생략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부대의견

없음

9.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10. 관련위원회 의견 요지

없 음

11. 기타 사항

없 음